

시립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45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4월 3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시립강동청소년센터는 2012.07.01부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고, 2020.06.30.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
- 나.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(조직담당관 민간위탁평가위원회), 2차(청소년정책과 적격자심의위원회)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음
- 다. 현 수탁법인이 청소년 수련활동 분야의 전문성과 시설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2022.06.30.까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요청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-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-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제1호

○ 재계약 사유

- 강동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상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청소년시설로,
- 지난 3년간 강동청소년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 청소년연맹은,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 사업과 대안학교 운영,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쉼터 운영 등 다방면에서 청소년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임
- 직원의 총 318명 중 63%가 청소년지도사로, 총 73개 분야 517개의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보유하는 등 청소년활동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과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음
- 강동청소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, 청소년종합센터로서 청소년활동, 상담, 복지 영역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망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시설운영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, 그 동안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이용 실적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음 (2017년 72%→2019년 77%)
- 따라서 향후 2년간 동 법인에게 재계약을 통해 강동청소년센터를 운영토록 하고자 함

다. 위탁 사무 내용

-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청소년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
-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
- 학교,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
- 청소년센터 관리·운영(시설물, 장비 등 포함)
-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 93길 47
- 시설규모 : 대지 1,983㎡, 연면적 5,125㎡ (지상 4층, 지하2층)
- 주요시설 : 헬스장, 체육관, 극장, 프로그램실 등
- 이용대상 : 청소년 및 학부모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: 2년(2020.7.1 ~ 2022.6.30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(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)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소요예산 : 2,676백만원('20년)

○ 산출근거

- 인건비 908백만원, 사업비 1,066백만원, 물건비 등 702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| |
|---|
|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|
|---|

○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| |
|--|
|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 |
|--|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| |
|---|
|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 |
|---|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- | |
|--|
|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|
|--|

※ 작성자 :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팀 김은진 (☎2133-4122)